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230호

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

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시행규칙 개정(2024.8.1.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에 전문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도록 하고 영문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, 기술인의 경력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관련 학과 인정방법 추가, 제출서류 간소화, 경력증명서 부분 발급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문분야별 등급 산정(안 별표3)

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별 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3 비교에서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제외 규정을 삭제

나.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절차 마련(안 제16조제6항, 제17조제1항제3호, 별

지 제5호 서식)

건설기술인 해외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영문 경력증명서 발급절차(처리
기간, 구비서류) 마련, 신청서식 수정

다.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인정방법 추가(안 별표2)

기술인의 경력신고 편의 제고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교육부 표준분류
체계를 활용한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 방법 추가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
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
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기술정
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
기술정책과 (우) 30103

- 전자우편 : jhlim89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55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에서 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(전화 044-201-35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